한국인터넷진흥워 청워심의회 운영규칙

제정 2023. 12. 28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원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주관부서"란 「청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(팀장급)로서 한국인터넷진홍원(이하 "진홍원"이라 한다) 민원처리총괄부서를 말한다.
- 2. "처리부서"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(팀장급)를 말한다. 다만,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3조 (다른 제·규정과의 관계) 진흥원 청원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제·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청원심의회 구성 및 역할

제4조 (청원심의 원칙)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한다.

제5조 (심의사항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.
- 제6조 (심의회 구성) ① 심의회는 진흥원 임직원인 내부위원과 진흥원 임직원을 제외한 사람 중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인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내로 하고,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② 심의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③ 내부위원은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진흥원 본부 부서의 팀장급 이상 으로 한다.
- ④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또는 진흥원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-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이 경우 간사는 주관부서 소속 청원업무 담당으

로 하다.

- 제7조 (직무윤리 사전진단 등) ① 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후보자에게 별지 제1 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- ②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제8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 (위원의 임기)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③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외부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며,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0조 (위원의 해촉) 원장은 심의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- 5.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- 6. 제16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**제11조 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 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(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-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절차는 「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」 제4조를 준용한다.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경우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·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.
- 제12조 (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) 외부위원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, 제7조, 제14조, 제21조(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) 및 제22조제1항 ·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3장 청원심의회 운영

- 제13조 (심의회 개최) ① 심의회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이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(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로 한다) 전까지 회의 일시 ·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제14조 (심의회 운영)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영상회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회 서면 의결서에 따라 서면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.
- 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-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- 4.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
-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출석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.
- ⑤ 회의 종료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 게 통보하고, 처리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법 제 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- 제15조 (자료의 제출 등)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.
-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에 심의대상 안건 담당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 담당직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,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4장 보 칙

- 제16조 (비밀준수 의무)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 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,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.
-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,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제17조 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 (운영지침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<2023. 12. 28.>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전 진흥원에 접수된 청원부터 적용한다.

직무윤리 사전진단서

성 명 : (서명)

연번	진단내용	체크	사항
1	심의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 하고 있다.	예 ()	아니오 ()
2	심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예 ()	아니오 ()
3	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 판·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()	아니오 ()
4	심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()	아니오 ()
5	심의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·의무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예 ()	아니오 ()

Е	'예'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직무를 공정하게 나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직무윤리 서약서

직 위 : 청원심의회 위원

성 명 :

상기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청원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되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,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심의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2. 심의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3.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4.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5.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- 6. 심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- 7. 기타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서 약 자 : (서명)

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

=1-11-11				
처리부서				
	청원명			
청원사항	청원인			
	청원요지			
요구 사유				
검토의견		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		
	흥원 청원심의회 원	은영규칙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 가	최를 요구합	
니다.				
		년 월 일		
		처리부서의 장	(서명)	
한국인터넷진흥원 청원심의회 위원장 귀하				

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

안건	
일시	
	검 토 의 견

위원 성명 : (서명)

[별지 제5호서식]

위 원

위 원

	청원	원심의회	서면 의결시	4		
의 안 명:			(청원접:	수번호	_	-)
의결주문:						
제안사유:						
	⁻ 한국인터넷진흥원 : 동의 여부를 아래의		명날인하여 주/		니다.	으로 의결하
				위원경	당:	(인)
	동의함			동의하지	않음	
위원	!장	(인)	위운	^일 장		(인)
위	원	(인)	위	원		(인)
위	원	(인)	위	원		(인)
위	원	(인)	위	원		(인)
위	원	(인)	위	원		(인)

(인)

(인)

위

위

원

(인)

(인)

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

안 건	
일 시	
심 의 결 과	

< 한국인터넷진흥원 청원심의회 위원 >

구 분	성 명	찬성 (심의결과 동의)	반대 (심의결과 반대)	비고	서	명
위원장						
위원						
위원						
위원						
위원						
위원						
위원						

[별지 제7호서식]

20 년 제 회 청원심의회 회의록

1	이시	
- 1	21	•

2. 장소 :

3. 출석현황 : 재적 명, 참석 명

가. 출석위원 :

나. 결석위원 :

다. 기타 참석자 :

4. 심의안건

심의번호	안 건	심의결과

5. 회의내용(구체적으로)

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한국인터넷진흥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칙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.

년 월 일

위원장 (인)

위 원 (인)

출 석 통 지 서

출석부서				
출석이유				
출석일시	년	월	일	시
출석장소				
유의사항	개최일 3일 2. 정당한 사-	전까지 도	- · · 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들석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. 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, 서면 를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

「한국인터넷진흥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칙」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인터넷진흥원 청원심의회 위원장